





보도참고자료

• 미래창조 금융

• 따뜻한 금융

• 튼튼한 금융

배포 시부터 보도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				
책 임 자	권유이 팀장 (2156-9790)	담 당 자	이선희 사무관(2156-9794) 김영대 사무관(2156-9798)		
배 포 일	2015. 7. 6. 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7 매		

제 목:「크라우드펀딩법」국회 본회의 통과

-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
- 하위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
- 창조경제혁신센터에「크라우드펀딩 플랫폼」을 구축하여 창업기업 지원

1. 추진 경과

- □ '15.7.6(월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(일명, 크라우드펀딩법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 - 동 법안은 '13.6.12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**정무위에서 수정가결**한 것으로, '15.6.16일 **법사위 심의**를 거쳐 **본회의에 상정**됨
- ◈ 크라우드펀딩(Crowdfunding): 대중(Crowd) + 자금조달(Funding)
 - 1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
 - ②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"집단지성(The wisdom of Crowds)"을 활용
 - 3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



2. 주요 내용

- ①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"투자형 크라우드펀딩"도입
 - o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**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**
- ② 창업기업의"자금조달 원활화"와"투자자 보호"양 측면을 고려
 -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,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

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

- ① **크라우드펀딩 중개**를 담당하는'<mark>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'신설</mark>
 -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
- ② 종래'투자중개업자'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
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, 자본금도
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
 - * 종래 투자중개업자와 진입규제 비교(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)

	투자중개업자	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	
진입규제	인가제	등록제	
최저자본금	약 30억	5억	
사업계획, 인적·물적설비, 경영건전성, 대주주 등 기타	*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특성(고객재산 관리 ×,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 영위 등) 반영 예정		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**온라인상**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
 - * (예) 준법감시인 선임, 일반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, 재무건전성 유지 등

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

- 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·비용부담 대폭 감소
 -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**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**하고, 기존 소액공모 (10억원 이하)보다도 **제출서류*를 대폭 간소화**
 - * 제출서류 비교

일반공모	소액공모	크라우드펀딩	
증권신고서 약 27종	공시서류 약 17종	증권의 발행조건, 재무상황, 사업계획서 등	

- ② 발행인·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<mark>집단지성 활용</mark>
 - o 증권신고서外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, 발행인이 **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** 및 투자자와 **쌍방향 의견교환 허용**

다 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

- ①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
 - o 1기업은 1년간 **7억원**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
- ② 투자자의 (동일기업당, 연간) 투자한도 제한
 -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**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** 등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**투자한도를 제한**
 - *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,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 차등화

구 분	동일기업당	연간 총 투자한도
일반투자자	200만원	500만원
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(예: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)	1,000만원	2,000만원
전문투자자 등	없음	없음

③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

-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
 -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

4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<mark>발행인·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</mark>

-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**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**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
 - 크라우드펀딩 증권 **발행기업과 대주주**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**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** 금지
 - * 유가증권 시장(6개월) 및 코스닥 시장(1년)의 경우에도 IPO 이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 주식 매도가 금지되는 '의무보호예수제도'가 존재함을 고려

수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

-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**일정비율(예: 80%) 이하**이면 증권발행 취소
 - 투자자들이 동 기업의 **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**는 신호로,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**당초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**을 고려

⑥ 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·예탁 금지 :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

○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**재산을 보관, 예탁받는 것을 금지**하고, **청약 증거금은 은행, 증권금융회사**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토록 함

7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등 금지

○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증권 취득,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

- 图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
 - 투자광고는 **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**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, **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** 발생을 방지
 - 다만, 포털 사이트 등에서 **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**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
 -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(Naver, Daum 등)에게도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*를 부여
 - * 중개업자 및 발행인이 광고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·권고하고,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정보 삭제 및 위반자 접속제한 등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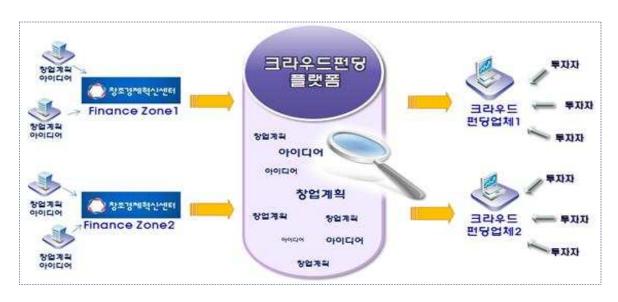
참 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주요사항: 투자자 보호 강화

- ①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도 제한 기간(1년) 설정
- ② 일반 투자자의 **투자한도 축소**: 200만원, 500만원
- 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투자광고 감독의무 부과

3.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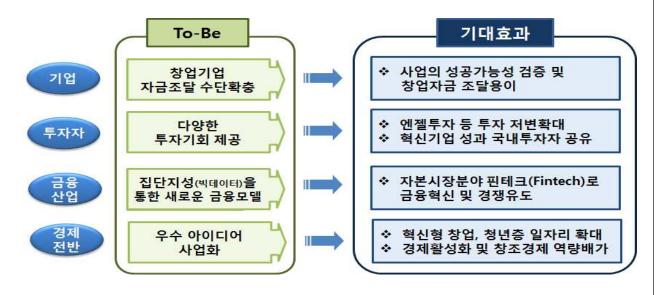
- ① 향후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**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(**16년 1월중) 시행
 - ⇒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**하위법령 정비**, 중앙기록 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**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**
 - 1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**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**(~10월)*하고, 금투협회 규정 및 업무방법서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(~연내)
 - * 현재 관계기관간 "크라우드펀딩 실무TF"를 운영 중으로, 7월중 입법예고 예정
 -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유관기관間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(~연내)
 - ③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**홍보자료집 작성**(8월)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**순회 설명회** 개최(8월~, 연중)
 -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(11월~)
 - * 심사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, 제도시행 초기에 등록신청 집중가능성 감안

- ② **창조경제혁신센터에** 「<u>크라우드펀딩 플랫폼」을 구축</u>하여, 우수한 창업기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**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연계**
 - ⇒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투자자간 탐색 비용(searching cost) 및 매칭비용(matching cost)을 절감
 - ※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련 대통령 말씀('15.6.2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)
 -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열매를 투자자와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
 - 혁신센터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지원되는 플랫폼을 마련해 달라
- 1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집적하는 온라인 기반·공공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
- ② 개별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·창업계획을 「크라우드펀딩 플랫폼」에 게재
- ③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·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·홍보하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



4. 기대효과

- □ 신생·창업기업이 **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**할 수 있게 됨으로써, **창업** 및 **사업화** 기회가 크게 확대
 - ⇒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
 - ① 중소·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
 - ※ [참고] 해외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"리버스" 사례
 - 미아방지용 스마트밴드 공급업체 "리버스"는 14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인디고고를 통해 4만3천달러(약 4,700만원) 등 모집하고, 최근 부족자금 3,300만원은 국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조달
 - ⇒ 향후에는 <u>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,</u> 혁신적 기업의 성공의 수익도 국내 투자자들이 향유 가능
 - ②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도 도움
 - ③ 자본시장 분야에서 집단지성(Big-data)을 활용한 대표적 핀테크 (Fintech) 혁신사례로 모험자본 분야의 경쟁과 혁신 주도

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

